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49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이성운
허성무 · 유동수 · 박홍근
민병덕 · 이연희 · 권칠승
전진숙 · 김남희 · 조정식
박해철 · 박 정 · 송옥주
김영진 · 강준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를 “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온라인)”을 “(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1항 중 ““온라인 자료””를 ““온라인 자료”, “인공지능 생성자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u>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u> 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 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 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 ----- ----- <u>-도서관자료(인공지능 생성자</u> <u>료는 제외한다)</u>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 서관자료(<u>온라인 자료는 제외</u>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 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 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 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	③ ----- ----- <u>(인공지능 생성자료</u> <u>및 온라인</u> ----- ----- ----- ----- ----- ----- -----

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 ⑥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신설>

-----.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

“온라인 자료”, “인공지능 생성자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과태료) ① 제7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부과·징수한다.